

번역아카데미 교원 운영지침

제정 2021. 1. 26.

제 1조(목적) 이 지침은 한국문학번역원 「한국문학 번역가 양성사업 시행요강」 및 「한국문학번역원 번역아카데미 학칙」에 의거 번역아카데미(이하 “아카데미”) 교원의 자격, 위촉 또는 임용, 처우, 계약의 해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조(정의) 교원은 아카데미 지도 교수, 소모임 담당 튜터 등 아카데미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로 정의 한다.

제 3조(자격) ①교원은 다음 각 호의 세부 자격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한다.

1. 국내외의 저명한 학자 또는 전문가로서 본 아카데미 운영에 필요한 식견을 갖춘 자
2. 한국문학전문번역가 혹은 이에 준하는 해당분야 경력을 보유한 자로서 번역실습 교과 강이가 가능한 자

제 4조(결격사유) ① “교육공무원법” 제10조의 4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본원의 교원으로 위촉 될 수 없다.

② 재직 중인 교원이 전항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날로 해촉 된다.

제 5조(교원운영위원회) ① 교원운영에 관한 다음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원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)를 설치·운영한다.

1. 교원운영제도의 개폐에 관한 사항
2. 임용 및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
3. 포상 및 징계의결에 관한 사항
4. 재임용의 심사에 관한 사항
5. 조기계약해지에 관한 사항
6. 제 규정에서 교원운영위원회에서 부의하도록 규정된 사항
7. 기타 번역교육본부장이 부의하는 사항

제 6조(위원회 구성) ①위원회는 운영위원장(이하 “위원장”) 및 운영위원(이하 “위원”)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장은 번역교육본부장이 되며 위원은 한국문학번역원 본부장 2인, 당해년도 임용 중인 아카데미 교수 1인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단 징계의결 등 필요시 외부전문가 1인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.

③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번역교육본부장이 지명한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.

- 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, 회의를 총괄한다.
-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임명하되 간사는 국내교육팀장, 서기는 위원회 운영 담당자로 한다.

제 7조(위원회 소집과 의결) ①위원회는 다음의 경우에 소집한다.

1.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
 2. 위원 중 2/3가 필요하다고 요청이 있을 때
-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2/3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·부 동수일 때는 위원장이 결정한다.

제 8조(교원 임용) ① 교원은 한국문학번역원장(이하 “원장”)의 위촉 혹은 공개채용에 의해야 하며, 공개채용시 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임용대상자를 확정하고 원장이 재가한다.

- ②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절차 및 세부사항은 위원회 결정사항을 따른다.
- ③ 임용기간이 만료된 교원은 신규채용을 원칙으로 하나 내부 심의를 거쳐 재임용할 수 있다. 단, 심의개시 직전학기까지의 총 강의평가 평균점수가 해당 학기 강의평가 평균 하위 10%이상인 경우 재임용 하지 않는다.
- ④ 임용 기간은 「한국문학 번역가 양성사업 시행요강」 제 6조 제 2항 혹은 임용계약서에 따른다. 다만 신규임용 교원 혹은 학기 중에 발생한 교원의 6개월 미만의 병가·출산휴가·휴직·파견 또는 계약해지로 학기 잔여기간에 대하여 긴급하게 대체할 교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기간을 정해 임용할 수 있다.
- ⑤ 제3조가 정한 자격을 갖춘 자를 교원으로 임용함에 있어, 학문후속세대 양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지원대상 및 심사기준의 일부를 달리 정하여 임용할 수 있으며, 구체적인 세부기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.

제 9조(계약의 해지) ① 원장은 교원이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원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
1.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업무수행이 곤란한 경우
2. 다음 각 목과 같이 정상적인 학사운영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
 - 가. 본원의 교과목 및 수업관련 정상 업무 불이행
 - 나. 본원의 승인을 받지 않은 대리수업
 - 다. 본원의 사전승인을 통한 휴강과 보강의무 불이행
 - 라. 수업시간 미준수 또는 강의계획서와 무관한 교과과정 진행
3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된 때
4. 본원의 업무형편, 예산 및 업무량의 감소 등(강의과목 폐지 등)에 의하여 계약을 종료할 필요가 있는 경우
5.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

② 위원회는 교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교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.

제 10조 (처우 및 보수) 강의료는 본원 「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별표 2」에 따르며 처우와 보수는 계약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정할 수 있다.

제 11조(시행에 필요한 사항) 원장은 이 지침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.

부 칙 (2021. 1. 26.)

제 1조(시행일) 이 지침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